

제1차 [2015~2019]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기본계획 수립 배경	1
II. 중견기업 현황 및 당면과제	2
III.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0
IV. 추진 전략별 실천과제	13
1. 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13
2. 중견 후속기업群 발굴·육성	20
3. 핵심역량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기업 육성	24
4. 사회적 책임 확산 및 정책기반 확충	29
V. 기본계획 이행방안	32
<p>< 첨부 1 > 기본계획의 지원시책 중견기업 지원 범위(안)</p> <p>< 첨부 2 > “Sliding down” 원칙이 적용되는 지원시책 현황</p> <p>< 첨부 3 > 중견기업의 개념 및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p> <p>< 첨부 4 > 중견기업정책 추진경과</p>	

I . 기본계획 수립 배경

- 우리 경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수출 의존형 성장구조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위기에 직면

* 30대 기업 영업이익 점유 비중(한은) : ('11) 40.6% → ('12) 44.2% → ('13) 51.7%
 * 실질경제성장률 : ('11) 3.7% → ('12) 2.3% → ('13) 2.9% → ('14) 3.3%

- 내수부진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우리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미약하고, 고용 없는 성장의 장기화가 우려

* 고용률(통계청) : ('13) 59.5% (OECD 기준 64.4%) → ('14) 60.2% (OECD 기준 65.3%)
 ·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OECD 기준은 15세 ~ 64세)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은 한국경제의 중추로서, '창조경제'로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견기업은 良質의 일자리를 창출

* 연평균 고용증가율('09 ~ '13) : 전체 기업 3.4% ↔ 중견기업 12.7%

<기업규모별 대졸 초임 분포>

구 분	2,000만원 미만	2,000~2,500만원	2,500~3,000만원	3,000만원 이상
중견제조업체	1.2%	14.0%	36.7%	46.9%
중소제조업체	29.1%	55.9%	13.2%	1.8%

* 자료출처 : 2014년 중소기업실태조사, 2014년 중견기업실태조사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갖는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생태계의 양극화 완화

<우량 중견·중소기업의 경영지표별 격차> (단위 : 개, 억원 명)

구 분	기업 수	평균 매출	평균 고용	평균 수출	평균 R&D
중소기업	144	426	129	163	19
중견기업	67	3,913	612	1,034	54

*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이내인 중견·중소기업 211개사 분석('13, 중기청)

- ◇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은 중견기업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견인차'로 새롭게 인식하고,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실천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Ⅱ. 중견기업 현황 및 당면과제

중견기업 현황

◇ 최근 중견기업 수 및 국민경제 기여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총괄 현황) '03년 통계 작성이후, 4배 이상 증가하여 '13년 3,846개로 성장 (관계기업 993개 포함)

* 중견기업 비중 : ('03) 0.03% → ('13) 0.12%

○ 최근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에 의해, 중견기업 진입이 급증

* 관계기업제도 도입 ('10), 중소기업 졸업 상한기준 신설 ('12)



① 업종별 현황

- 제조업 (1,675개, 43.6%)은 전년대비 7.6% 증가, 업종별로 고르게 분포



- 비제조업 (2,171개, 56.4%)은 전년대비 15.5% 증가했으며, 도소매업 (576개사)에 가장 많이 분포



- ② (기업규모별 현황) 매출액 구간별로는 중소기업 규모에 준하는 1,000억원 미만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 (57.2%)

100억원 미만	100~ 500억원	500억원 ~1천억원	1천억원 ~2천억원	2천억원 ~3천억원	3천억원 ~5천억원	5천억원 ~1조원	1조원 이상
821 (21.3)	850 (22.1)	532 (13.8)	701 (18.2)	398 (10.4)	272 (7.1)	192 (5.0)	80 (2.1)

- (경제적 위상)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체의 0.12%에 불과하지만, 고용·수출 등에서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

- ① (매출) 총매출액은 629.4조원으로 전년(595.1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매출 상위 1~3위의 합(585조원)을 상회

(단위 : 조원)

구 분	'03	'05	'07	'09	'11	'13	전년대비
전 산 업	215	225	257	306	428.3	629.4	5.8%
제 조 업	142	138	155	181	260.6	375.2	3.1%
비제조업	73	88	102	125	167.7	254.2	9.9%

- ② (수출) 총수출액은 876.9억불로 전년(728.3억불) 대비 20.4% 증가하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년 13.3%에서 '13년 15.7%로 상승

(단위 : 억불)

구 분	'03	'05	'07	'09	'11	'13	전년대비
전 산 업	375.6	400.9	479.8	402.2	658.6	876.9	20.4%
제 조 업	358.7	357.5	442.5	386.8	593.0	787.2	24.5%
비제조업	16.9	43.4	37.3	15.4	65.6	89.7	△6.6%

- ③ (고용) 중견기업 근로자는 116.1만명으로 전년(106.6만명) 대비 8.9% 증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년 9.5%에서 '13년 9.7%로 상승

(단위 : 만명)

구 분	'03	'05	'07	'09	'11	'13	전년대비
전 산 업	64.7	65.7	67.3	71.9	93.4	116.1	8.9%
제 조 업	34.1	32.6	32.1	33.6	42.5	58.0	7.2%
비제조업	30.5	33.1	35.2	38.3	50.9	58.1	10.5%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사례

<p>코나아이(주)</p> 	<p>■ 회사개요('98년 창업, '13년 중소 → 중견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 시스템소프트웨어, 직원 207명, 매출액 2,050억원, '11년 '월드클래스 300' 선정 <p>■ 성장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 창업 후 5년간 교통카드와 전자화폐 시스템구축사업에 참여하다 '04년 국내 유일의 스마트카드 플랫폼 개발로 성장 • '08년 중국 지사 및 '13년 미국법인 설립으로 해외매출이 급증하여 '14년 수출 1억불 탑을 달성
<p>샘표식품(주)</p> 	<p>■ 회사개요('46년 창업, '10년 중소 → 중견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 간장 등 장류, 직원 632명, 매출액 2,367억원, '13년 '월드클래스 300' 선정 <p>■ 성장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년 창업, '54년 업계 최초로 식품연구실을 설립하여 R&D에 매진하여 성장해오다, '71년 주식회사로 전환 • 자급자족을 목표로 '99년 첫 해외수출 후 현재 80여개국에 연간 100만톤 수출, 가업승계 3대 기업이며 국내시장 점유율 1위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 사례

<p>이랜드</p> 	<p>■ 회사개요('80년 창업, '12년 중견 → 대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 의류, 직원 1,711명, 매출액 4조 6,951억원 <p>■ 성장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년 '잉글랜드'라는 옷가게로 출발, '86년 이랜드로 법인 전환 후 시계, 주얼리 등에도 진출하여 '93년에 매출 5,000억원 달성 • IMF 외환위기에 구조조정으로 핵심역량을 패션과 유통에 집중, 유럽 브랜드 M&A 등으로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현재 전세계 18개국에 법인 설립·운영
<p>세아그룹</p> 	<p>■ 회사개요('60년 창업, '09년 중견 → 대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 철강파이프, 직원 4,512명, 매출액 5조 7,281억원 <p>■ 성장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년 '부산철관공업사' 창립부터 철강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여 '67년에 첫 수출에 성공 후 '81년 수출 1억불 달성 •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이탈리아 '이노스텍'사 인수 등 유럽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14.3)

당 면 과 제

◇ 중소 → 중견기업 성장걸림돌로 '피터팬 증후군'이 상존하고, 규모의 영세성, 혁신역량 부족 등 글로벌 전문기업 성장에 애로

① 이분법적 법률 등 구조적 걸림돌 존속 → 중견·대기업 성장 기피

- 그간의 정책적 노력으로 일부 제도는 개선*되었으나, '중소기업 - 보호·육성, 중견기업 - 지원 배제'라는 이분법적 지원체계는 여전

* 성장걸림돌 현황 : ('13.1) 83개 (중단 63, 규제 20) → ('15.1) 73개 (중단 57, 규제 16)

-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지속

* 中堅 → 中小 회귀 현황 (개) : ('10→'11) 91 → ('11→'12) 50 → ('12→'13) 76

* 중소기업으로 회귀할 검토한 적이 있는 중견기업은 8.9% ('14, 중견련)

-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전체 기업 중 중견기업 (근로자 300~999명 기준) 비중이 가장 낮은 편

<주요 국가별 근로자 규모별 기업 비중(%)>

구 분	1~9명	1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300~999명	1,000명 이상
독 일	80.13	17.82	1.40	0.65	0.57	0.08
일 본	75.40	22.12	1.73	0.75	0.55	0.20
미 국	76.52	21.44	1.26	0.78	0.57	0.21
핀란드	94.33	5.19	0.28	0.2	0.16	0.04
대 만	90.88	8.55	0.40	0.17	0.12	0.05
한 국	92.19	7.35	0.36	0.1	0.08	0.02
이탈리아	94.99	4.75	0.17	0.08	0.07	0.01

*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서 중견기업은 근로자 300~1,000명, 대기업은 1,000명 이상으로 정의

* 단, 미국, 이탈리아, 핀란드는 100~250명, 250~1,000명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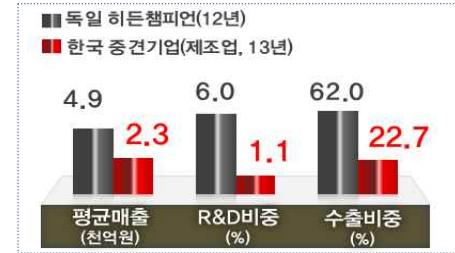
⇒ 범부처적으로 연차별 성장친화적 법령·제도 정비를 통해 지원絶壁을 점진적으로 축소 (Sliding down)

② 소규모 기업화 심화 및 혁신역량 부족 → 글로벌 경쟁력 약화

- 최근 중견기업 수 증가가 주로 기준 변경에 기인하여, 중소기업 규모에 근접하는 소규모 중견기업 비중이 증가

* 매출 1,500억원 미만 중견기업 : ('12) 2,067개 (60.2%) → ('13) 2,417개 (62.8%)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R&D 투자 및 영업이익률 등도 감소 추세여서, 히든챔피언으로 성장에 한계



* 히든챔피언 수 : 독 1,307개('12) >> 韓 63개('13)

* 중견기업 평균 R&D 비 중 : ('11) 1.13% → ('12) 1.08% → ('13) 0.88%
 평균 영업이익률 : ('11) 5.42% → ('12) 4.43% → ('13) 4.14%

- 중견기업 진입 이후에 조세지원 축소, 전문인력 부족 등의 애로를 호소



* 대기업에 비해 낮은 인지도로 신규채용시

애로 경험 31.3%, 입사 3년 이내 이직률 13.3% 자료출처 : 중견기업 실태조사('13.11)

⇒ 초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R&D, 전문인력 확보 등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히든챔피언 육성 시책을 확충

③ 지역 편중 및 후보기업群 취약 → 불균형적인 기업생태계 초래

- 지방 소재 중견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견 후보기업**은 '13년 749개에 불과하여 중견기업의 저변이 취약한 상황

* 지방 소재 기업의 비중('13) : 중견기업 45.5%, 중소기업 52.2%

** 후보기업 : 유예기간에 있는 중소기업 + 성장성 또는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 중소기업 정책의 중심을 성장 지원을 통한 중견 후보기업群 확대에 두고, 지역 강소기업 육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

□ 주요 선진국에서도 중견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주요 국가들은 산업구조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육성에 관심
-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에서도 흔들림이 없던 독일 경제의 비결이 강한 중견기업("히든챔피언")으로 지목되면서 이러한 추세가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4.0%로 미국 (2.5%), 영국 (1.7%), 프랑스 (1.7%) 등의 선진국을 압도 ('10년 기준)

* 독일의 고용률 지속 증가 : ('09) 68.7% → ('11) 71.1% → ('13) 72.3%

- 미국의 경우에도 약 20만개의 중견기업(종업원 300~999명)이 민간 부문 GDP의 1/3을 차지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선도

* 연평균 고용증율('09~'1) : 중견기업 3.8% →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 △9.5%

□ 국가별 분류기준 차이로 중견기업에 대한 객관적 비교에는 한계

- EU 국가들은 중소기업-대기업으로만 구분하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유사한 근로자 50~250명의 중소기업을 중간규모 기업으로 인식

*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0인~299인의 기업('14년 기준)

- 미국, 일본* 등도 별도의 공식적인 중견기업 분류 기준은 없는 상황

* 일본은 기관별로 통계작성시 자본금 5,000만~10억엔(총무성), 자본금 1억~10억엔(일본 은행) 기준을 사용하나 공식적인 중견기업 범위 기준은 없음

- 다만, 프랑스는 '08년부터 '중견기업'을 법제화*하였으며, 대만은 '12년 수립한 『중견기업 활성화 계획』에서 중견기업 범위를 명시**

* 고용인원 250~4,999명의 기업 중 매출액 15억유로 미만 또는 자산총액 20억유로 미만, 250인 미만 기업 중 매출액 5천만유로 이상 또는 자산총액 43백만유로 ~20억유로

** 연 매출액 200억 대만달러(약 6.8억달러) 이하 또는 고용인원 2,000명 이하인 기업 중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자기자본 8천만 대만달러 또는 근로자 200명 이하)이 아닌 기업

□ 주요 국가별 중견기업 육성정책

- ◆ 프랑스, 대만은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서 별도의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가
- ◆ 독일, 중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중견기업만을 위한 육성정책은 없으나, 중소기업 지원시책 범주 내에서 다양한 지원을 실시

【프랑스】

- '08년 경제현대화법을 통해 중견기업(Entreprise de Taille Intermediaire) 기준을 확립하고, 중견기업 관련 노무관리, 세제, 자금 등을 지원
 - * 법인세 및 영업세 감축(감세율 66%), R&D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세
 - * 중소기업 기술혁신투자기관(Oséo)은 총 보증지원금의 약 30%를 중견기업에 배정
 - '12년 공공투자은행법(Banque Publique d' Investissement) 제정을 통해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재정비
 - 중견기업 지원 법령으로 제정된 공공투자은행법('12.12월 제정)에 의해 기존의 기술혁신투자기관은 보증기금회사(CDC Entreprises), 투자전략기금(le FSI), 지방투자전략기금(FSI Régions)과 합병하여 공공투자은행그룹으로 변경('13.6월)
 - * 기술혁신투자기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지원
 - 공공투자은행의 구체적인 중견기업 지원정책에는 참여개발협정, 수출보조금 간소화, 연구·개발(R&D)사업 관련 세금에 대한 사전융자금 지원, 자본투자가 있음
- ① 참여개발협정(Le contrat de développement participatif) : 근로자 5,000명 이내의 중견·중소기업으로서, 3년 이전에 설립되어 안정적인 재정 상태이며, 향후 최소한 연 5%의 총 매출이 증가할 것을 조건으로 기업에 최대 3백만 유로까지 지원
 - ② 수출보조금 간소화(Offre simplifiée à l'export) : 기존의 중견·중소기업 수출보조금 정책을 개선하여 기업보조금 지원방식을 간소화, 유사 재정 보조금 지원을 폐지하고 '개발-수출' 융자금으로 일원화
 - ③ 자본투자 : 혁신, 국제개발, 대외발전, 통신 분야 등의 기술 및 사업 개발과 관련하여 공공투자은행이 최소 3만 유로에서 최대 5만 유로까지 자본투자

- ④ **연구·개발(R&D)사업 관련 세금에 대한 사전융자금 지원** : 중견·중소기업이 관여한 연구·개발 기간 내에서만 지원하며, 융자기준은 연구·개발 세금의 80%이고 나머지 20%의 세금은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부담

【대 만】

- 대만은 기업들의 제조기술은 뛰어나지만 핵심기술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12년 『중견기업 도약 추진계획』을 발표
 - 3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50개 내외의 유망 기업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 → 3년간 150개 중견기업 지원, 1,000억 대만달러 투자, 1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 ① **인력 지원** :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산업인력 훈련보조금 상향 등
- ② **기술지원** : R&D 대출금액 상향조정, R&D 투자 우선 지원 등
- ③ **지재권 관리** : 지재권 관리 및 특허권 포트폴리오 구축역량 강화 지원 등
- ④ **브랜드 마케팅** : 기업 자체 브랜드로 해외마케팅시에 가격보조, 대출금액 상향 등
- ⑤ **우수기업 포상** : 매년 10개의 탁월한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포상
- 중견기업 지원 전담기구로 경제부 산하에 ‘중견기업 지원 TFT(中堅企業發展推動委員會)’를 설치하여 지원과 성과를 점검 환류

【영 국】

- 영국은 독일을 벤치마킹하여 고용창출의 보고인 **고성장 중소기업 500개사**를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HELP TO GROW**” 사업을 발표('15.2.10)

* 대출보증과 민간투자 매칭으로 10억 유로(약 1.2조원)의 자금을 지원

【독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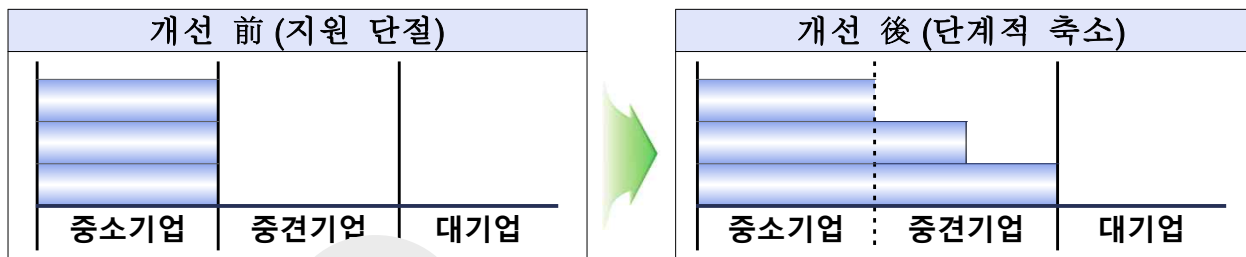
- '06년 “Mittelstand Initiative”를 수립하여 시장개척, 신기술 도입, 상속세 개혁 등을 추진하고, '11년 7대 신규 핵심정책* 제시
- * ① R&D 등 혁신역량 강화, ② 전문인력 확보, ③ 벤처캐피탈 및 창업 활성화, ④ 수출지원, ⑤ 자금조달, ⑥ 에너지·자원 효율화, ⑦ 규제개혁 등
- * **Mittelstand** : 종업원 수 10명~499명 & 매출액 100만유로~5,000만유로 미만 기업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중견기업과 일부 중부

Ⅲ.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중견기업 시책 기본방향

- (정책방향) 중견기업의 量적 확대, 質적 성장을 위해 성장부담 완화, 중견 후보기업群의 저변 확충, 글로벌 전문기업化 추진

- ① 중견기업은 규제개선 등 간접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성장 부담의 단계적 축소(Sliding down)” 원칙에 따라서 지원絶壁을 해소



- ② 중소기업 內 “소기업 → 중기업 → 중견 후보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방식을 개선

구 분		정책방향	
중견기업	중견기업	■ R&D, 세제 등 지원 ■ 중견기업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초기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	■ 규제개선 등 간접적 지원
	초기 중견기업 (③중견 진입 3년 이내)		
	↑		
중소기업	중견 후보기업 (②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①매출 300~1,000억원 이상 등)	■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수단을 활용하여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	
	↑		
	중소기업	■ 유망 중소기업 선별지원을 통한 중견 후보기업 육성	

- ③ 초기중견기업을 중심으로 R&D,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등 핵심 역량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을 촉진

* 지원대상 : (제한적 지원 원칙)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매출 3천억원 미만 등

* 지원방식 : (차등적 지원 원칙) 중소기업에 비해 지원한도 등을 축소하여 연착륙 유도

추진전략

□ (이행방안) 법령 - 시책 - 예산을 성장친화적으로 개선

- (법령) 중소기업만 지원대상으로 하거나,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시하는 이분법적 법령들을 성장친화적으로 단계적 개편
- (시책) 법령 정비 후 또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으면 사업지침 등을 개정하여 중견기업 지원 강화('16~)
- (예산) 재정여건의 한계 및 중소기업 지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견기업 재원 배분을 검토

□ (지원체계) 민간과 정부, 부처와 부처 간의 원활한 연계와 협조를 위해 (가칭)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

- (구성) 중기청(주최), 중견기업계 관계자, 정부부처 실·국장급, 민간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 참여 부처별 역할(예시)>

- 중기청 : 중견기업 정책 수립, 중견 후보기업·히든챔피언 육성 등
- 기재부 :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중견·중소기업 재원배분 등
- 산업부 : 산업 R&D, 해외 마케팅 등을 활용한 중견기업 핵심역량 강화 등
- 미래부 : 중견기업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 정부출연(연) 역할 강화 등
- 금융위 : 초기 중견기업 등의 금융애로 완화 등
- 공정위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등에서의 중견기업 보호와 책임 부여 등

- (운영)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법령·제도 개선사항, 부처 간 협업사항*을 발굴·논의

* 예시) 고급 R&D 인력 지원사업을 운용하는 미래부, 산업부, 교육부, 고용부와 협업하여 중견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연계·조정 방안 논의

비전 및 정책목표

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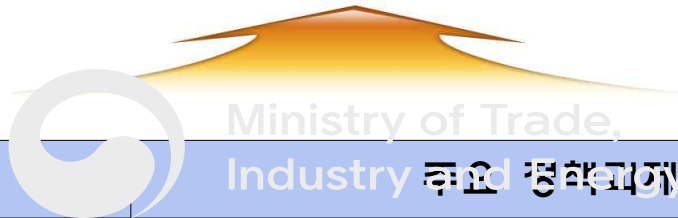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중견기업



'13

'19(목표)

목 표	국민경제 기여도 제고	고 용	116만명	⇒	155만명
		수 출	877억불	⇒	970억불
	세계 최고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	한국형 히트챔피언	63개	⇒	100개
		중견기업	3,846개	⇒	5,000개



분 야	주요 정책과제
1. 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① 중소 → 중견기업 성장친화적 법령·제도 정비 ② “대기업” 용어 사용 법령 정비
2. 중견 후보기업群 발굴·육성	① 유망 중견·중소기업 집중 육성 ② 지역 단위의 중견 후보기업 지원체계 구축 ③ 중견 후보기업群 저변 확대
3. 핵심역량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기업 육성	① 기술혁신 역량 기반 확충 ② 세제·금융·수출판로 등 경영여건 개선 ③ 인력지원 및 장기재직 유도 ④ 명문 장수기업 지원
4. 사회적 책임 확산 및 정책기반 확충	①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참여 촉진 ② 인력양성 및 취업 지원에 선도적 역할 수행 ③ 중견기업 정책기반 확대

IV. 추진 전략별 실천과제

전략 1

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부담을 실증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대비 중견기업의 **확연한 성장률 격차**를 확인

* '10년 기준 중견기업 진입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남아있는 기업을 구분,
'10년 전후 3년간 양 기업군의 평균 성장률을 비교·분석('14, 중기연구원)

<중소 → 중견기업 성장부담 분석결과>

구 분		'07~'09 (A)	'10~'12 (B)	B-A
평균 매출 증가율	'10년 중견 진입 계속 중소기업	16.73%	5.93%	△10.80%p
	중소기업	8.01%	10.25%	2.24%p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	'10년 중견 진입	35.31%	-10.27%	△45.58%p
	계속 중소기업	10.40%	2.20%	△8.20%p

- 중견기업법의 시행('14.7)으로 체계적 중견기업 정책의 기본 틀은 마련되었으나, 수십 개 개별 법령상의 성장걸림돌은 여전
- 성장사다리 정책취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시책은 '13년 16개에서 '15년 현재 37개로 개선
 - 그러나, '13년에 조사된 성장걸림돌 83개 중에서 '15년 현재까지 73개가 남아 있는 상황

<중소 →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현황>

구 분	지원 배제							규 제 산규적용	합 계
	조세	금융	R&D	인력	판로	기타	소계		
'13년 조사	21	7	10	7	10	8	63	20	83
'15년 확인	18	7	9	7	10	6	58	16	73

주요 추진과제

① 중소 → 중견기업 성장친화적 법령·제도 정비

【재정적 지원 분야】

□ (기본원칙) 중견기업의 수요 및 정책적 지원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지원시책을 선별적으로 확대 적용

○ 재원의 한계 및 중견기업의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할 때, 모든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모든 중견기업에 확대하는 것은 곤란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중견기업 정보마당』 DB를 연계하여 중견기업 생애주기별 정보 관리

* 지원 후 고용·매출 증가 및 중소 → 중견 후보 → 중견기업으로 성장이력 등 확인

- “성장 사다리” 관점에서 지원시책별·기업규모별 자원배분의 적절성 및 시·공간효과 등에 대한 Matrix 분석 실시

○ R&D, 전문인력, 해외마케팅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지원수단을 선별하여, 제한적*·차등적**으로 지원 (‘15~)

* 제한적 :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예시)

· 중견기업 진입 직후의 지원단절 해소 목적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변경 등의 외적 요인에 의한 지원대상의 지나친 변동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차등적 : 중소기업에 비해 지원비율 등을 축소하여 연착륙 유도(Sliding down)

·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체적인 혁신역량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

<제한적·차등적인 중견기업 지원 사례>

■ 공공조달시장 참여(안) : 매출액 2천억 미만이고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만 허용

■ 세제지원 : 안전설비 등 시설투자시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를 차등 적용(‘15.1.1~)
(중소기업 10% >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 5% > 대기업 3%)

- 다만, 중견기업을 지원해도 중소기업 지원 몫의 감소 우려가 낮은 지원시책 등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검토

□ **(정비 검토 대상)** 중소기업 범위 인용법률 (56개) 등 성장 저해가 우려되는 150여개의 법령을 발굴

- 중소기업만을 지원하더라도 중소 → 중견기업 성장단계와 무관한 법령 (예시 : 창업·소상공인 지원 등)은 정비 검토 대상에서 제외
- 개별 지원사업에 초기 중견기업 참여 허용 등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는 '15~'17년까지 개정
- 그간 일정부분 개선이 이루어졌고, 재정건전성 등 국가적 파급 효과가 큰 세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장기과제로 추진

<성장친화적 법령·제도 정비 검토 대상 및 로드맵(안)>

단기('15) : 11개	중기('16~'17) : 12개	장기('18~'19) : 4개
<p><중기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p><공정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p><산업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p><산업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산업융합촉진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무역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 무역거래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p><미래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p><기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향후, 지원시책의 신설-변경에 대응하여, 성장사다리 관련 법령·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에 상정

□ **(정비 방식)**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통해 법령·제도에 대한 종합적·심층적 논의를 거쳐 정비 여부를 결정 및 추진

○ **(중기청 소관 법령)**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법령에 특례를 일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 (‘15~)

- 구체적인 대상사업, 지원방식, 적용범위 등은 사업별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중기청 소관 법령·제도 정비 세부내용(안)>

법령	조항 및 지원시책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 제9조제1항(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사업) ○ 제10조(정부출연 대상) ○ 제18조(정보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 제12조(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자문) ○ 제13조(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 ○ 제18조(기술보호관제 서비스의 제공) ○ 제23조~제28조(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 제10조(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 제13조(외국전문인력 활용지원), ○ 제35조의2(성과보상기금의 설치) ○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26조(판로지원사업 중 국외판로를 위한 사업) ○ 제27조(국외판로지원계획 수립)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제정의 설치) ○ 제67조(기금의 사용)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1조의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등)*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은 벤처특별법 시행령에서 직접 개정 추진

○ **(관계부처 소관 법령)**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소관 부처 자체적으로 개별 법령·시책 정비 (‘15~)

【非재정적 분야(규제)】

□ **(기본원칙)** 중견기업에 신규적용되는 규제는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산업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

□ **(정비 검토 대상)** 중견기업 진입 후 대기업과 동일한 정도의 규제가 즉시 적용되는 법령 및 제도를 우선 검토

- 다만, 고용인원과 비례한 사회적 의무 부과(예시 : 고령자 고용) 등 현행 매출액 기준의 기업분류 체계와는 무관하며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규제는 신중하게 추진

□ (정비 방식)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중견기업 규제 발굴 노력을 지속

② “대기업” 용어 사용 법령 정비

□ ‘15년 현재, “대기업” 용어 사용 법령 중에서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

- 이로 인해, 중견기업법령상의 중견기업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시하는 문제가 발생

“대기업” 용어 사용 법령 현황 >

대기업 정의	해당 법령
별도의 명시적 정의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수산업법 시행령, 발명 진흥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방송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가 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5개
“중견·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1개

□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기업 = 중견·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개정 추진

* 전문기관 연구용역 (‘15.6~8) →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 논의 (‘15.9~10) → 정비방안 마련 및 추진 (‘15.11~)

-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법상의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단순 인용하고 있는 법령들부터 우선적으로 검토
- “대기업” 용어 정비만을 위한 법령 개정은 곤란한 점을 감안, 소관 부처별로 해당 법령의 개정 수요 발생시에 용어까지 정비 (‘16~)

참고

“대기업” 용어 사용 법령 현황

법령	대기업 정의	조문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없음	-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규정(제47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기업인 건설업자 와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가능 (제48조)
공간정보산업진흥법		- 공간정보 관련 공사·제도 등 입찰 낙찰자가 아닌 자 중 제안서 평가 우수자에 대해 작성비 일부 보상가능.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공간정보 사업자가 협력·입찰시 보상제외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예외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으로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제28조제3호)
병역법 시행령		- 대기업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음(제77조제3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시책추진(제35조)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대상에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 포함 (시행령 제53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집적 형성체계 :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제4조의3)
상공회의소법		상공회의소 사업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협조와 조정(제3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정부는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에 대한 우선 지원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제33조)
지식재산기본법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지식재산의 거래를 방지(제28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국가는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제3조) - 위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제10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기청장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홍보 교육을 실시(제17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보호 상생협력 지원(제21조)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이 함께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지원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의 공동활용사업(제8조) 및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시행령 제9조)
방위사업법/시행규칙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대기업 이 중소기업자를 인수·합병하거나 방산업체간에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부장관과 협의, 사업조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제36조제1항) - 사업조정을 위한 사실조사시 10일전까지 해당 대기업자 등에 통지(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이행공고의 공표 방법 등) - 사업조정 합의서 및 신청서 등(시행규칙 제32조의2)
수산업법 시행령	(상생법의 대기업 인용)	- 어업면허 제외대상 : 대기업 (제11조제1호) - 공정거래법 제2조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과 계열회사(제11조제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대규모 유통업자란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법 령	대기업 정의	조 문 내 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기업 또는 대기업계열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제5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제8조의2) - 법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함(시행령 제9의3)(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제2조제2호) -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하는 공동 활동(제3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센터의 지원대상자 : 중기업으로서 대기업과 재산권 분쟁중에 있는 기업(제9조의5제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기업 전용단지의 지정은 대기업이 협력기업과 함께 이전시 대기업 입주면적은 단지용지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지정가능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시행령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함(제24조의2제2항)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자(시행령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자료협조)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p>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는 경우 중소기업 종사자와 그 외의 대기업 종사자로 구분(제9조)</p> <p>그 밖의 법사업체 선정 시 소기업, 중기업, 그 외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제20조)</p>
이러닝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대기업인 이러닝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제20조의5) - 이러닝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인 이러닝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자로서 이러닝사업자로 신고된자(시행령 제16조의3)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의 100분의 50 감면(제7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중견·중소 기업이 아닌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제2조제6호)
방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집단(대기업)과 그 계열사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지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제8조제3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2초과 취득소유할 수 없음 (제18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자산총액이 10조원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시행령 제14조)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료 징수)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제22조제1항제3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을 위한 서류제출) 주주(지분소유자)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의 출자 현황(제5조)

전략 2

중견 후보기업群 발굴·육성

현황 및 문제점

□ 중견기업의 量적 확대를 통한 기업 생태계의 허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중견 후보기업群을 적극 발굴·육성할 필요

- 중견 후보기업群이란 중견기업법령상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및 이에 준하는 유망 중소기업 (예 : 고성장 중소기업) 등을 모두 포함

* ① 졸업 유예기간에 있는 중소기업,

② 성장성 또는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중견기업법시행령 제2조)

□ 향후 3년 이내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749개 (13년 기준)로서, 중견기업의 전변이 매우 취약

* 유예기업 127개, 4 성장률 15% 이상 527개, R&D 투자비율 2% 이상 95개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시책이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어 중견 후보기업群 육성에 한계

<주요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매출액 규모별 지원비중(%)>

구 분	10억 미만	10~50억	50~100억	100~300억	300억 이상	합 계
글로벌 강소기업	-	4.9	10.6	48.6	35.9	100
기술혁신개발 R&D	34.5	39.9	13.1	8.3	4.2	100
구매조건부 R&D	11.8	31.8	21.2	21.8	13.5	100
신성장기반자금	4.9	33.9	25.3	28.0	7.9	100
중소기업간 경쟁	57.0	18.8	11.4	9.2	3.6	100

□ 한편, 중견기업의 64.5%,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64.2% 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중견·중소기업 육성도 시급

* 수도권 분포 현황 : (중견기업) 서울 39.3%, 경기 21.1%, 인천 4.1%

(중견기업 후보기업) 서울 33.1%, 경기 25.8%, 인천 5.3%

주요 추진과제

① 유망 중견 · 중소기업 집중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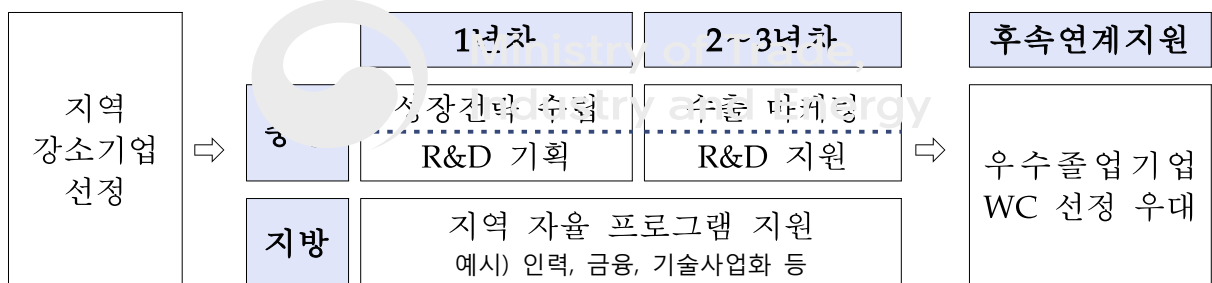
- **(지역 강소기업)**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유망 중견 ·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입체적으로 지원 ('15~, 중기청)

* ① 매출 100억(SW부문은 25억) ~ 1,000억원 미만 중견·중소기업 &

② 직전년도 매출액대비 직 · 간접 수출비중이 10% 이상이고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8% 이상

- 중기청과 지자체가 협업으로, 1년차에 성장전략 수립 및 R&D 기획, 2~3년차에 수출마케팅 및 R&D 수행 등을 지원

<지역 강소기업 지원체계>



- '14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지자체로 확대 추진

* ('14) 18억원, 4개 지자체, 23개 기업 → ('15) 100억원, 14개 지자체, 80개 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年수출 5백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수출 5천만불 이상 기업으로 육성 (중기청)

- 글로벌역량 진단, 브랜드 개발 등을 3년간 1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R&D 프로그램 운영
- 지원성과가 낮은 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을 취소하고 매년 신규 선정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 ('14년 380개 → '15년 430개, 누계)

- **(고성장 중소기업)** 고용과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수출마케팅 · 정책자금 ·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 ('15~, 중기청)

구 분	지원내용
선정기준	3년 평균 고용증가율 또는 매출증가율 20%(지방소재 기업은 15%) 이상 기업으로서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지원한도를 확대(2~5천만원 → 1억원)하고, 최소 제한조건 외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부프로그램 구성 · 운영
정책자금	별도의 전용자금을 신설하여 대출한도 확대(45억원 → 70억원), 신청 횟수 제한 배제 등 고성장 기업 맞춤형으로 운영
R&D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

-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3개년 계획 ('15~'17)을 마련하고, '15년부터 3년간 총 1,500개 이상의 고성장 기업을 선정 · 지원

② 지역 단위의 중견 후보기업群 지원체계 구축

- **(지역협의체)** 지역 단위에서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중견기업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협의체 ("지역강소기업성장위원회")를 구성 · 운영

-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중소기업청, 유관기관 등
- **(역할)** 지원대상 기업 선정, 지역 총괄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자율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논의하고 주요 안건 의결

< 지역강소기업성장위원회(안) >

구 성	<div> <div> 협의체 지자체 지방청 지역혁신기관 </div> <div> 운영위원회 6인 <div> 협의체 참여 기관별 1인 </div> <div> 협의체 참여 기관별 추천 1인 </div> </div> <div> 지원기관 POOL <div> 지역 대학 지역 연구소 지역공공기관 수출지원센터 </div> </div> </div>
역 할	<div> <div> ① 기업 평가 · 선정 · (혁신기관) 기업평가/선정절차 전담 · (지방청) 혁신기관 관리 · 감독 · (지자체) 선정결과 최종 확인 · 보고 </div> <div> ② 지역 자율프로그램 운영 · 기업 지원 계획 수립 · 의결 · 지원시책 실시 및 운영 · 성과관리 및 사후평가 </div> </div>

- **(운영)** 지역형 강소기업 사업에 시범 적용 ('15) 후 지역별 중견 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 활용 추진

- **(지자체의 중견기업 육성)** 지역 내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제도적·절차적 조치 마련

* 사례) 인천시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이차보전 방식의 자금지원 및 수출지원 등을 통해서 '18년까지 30개 내외의 중견기업 육성을 추진 중

- 자체적으로 중견기업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지자체는 지역형 중소기업 사업 등에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 중견기업법상 지자체의 역할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 등 기업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절차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견 후보기업의 저변 확대

- 중소기업 내에서 지원시책별 재원배분 현황 및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장사다리 작동 여부를 파악

< (예시) 중소기업 R&D 지원현황 >

◆ '14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에서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지원과제의 75%, 지원금액의 67%가 집중

매출액 구간	~50억원	50~100	100~300	300~500	500억원~	합 계
과 제 수(개)	4,430(75.6%)	577(9.8%)	569(9.7%)	144(2.5%)	143(2.4%)	5,863(100%)
지원액(억원)	5,063(67%)	858(11.3%)	1,029(13.6%)	299(4%)	306(4%)	7,554(100%)

◆ 중소기업 R&D 지원이 소액·단기(과제당 평균 1.4년, 1억 3백만원) 위주
→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중견후보기업群 저변 확대에 애로 예상

- 혁신역량과 성장의지가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운용 등 정책의 사각지대 개선을 검토

전략3

핵심역량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기업 육성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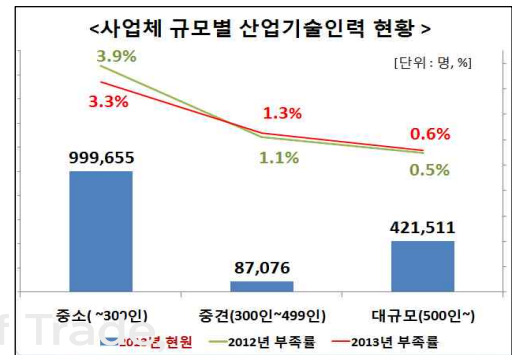
- 국내 중견·중소기업은 「전문인력 확보 애로 → 단순 상용화 개발 → 좁은 내수시장 안주」라는 ‘저성장 함정’에 직면

* 미국全美중견기업지원센터의 연구(‘15.3)에서도 우수인재 유치·확보가 중견기업의 실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면, 인재경영은 중견기업의 핵심 애로요인 중 하나

- 중견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12년 1.1%에서 ‘13년 1.3%로 증가

- R&D 및 기술혁신의 가장 큰 애로*는 전문기술인력 부족(‘13, 중견련)

* 전문기술인력 부족 37.2%, R&D 세제혜택 감소 25.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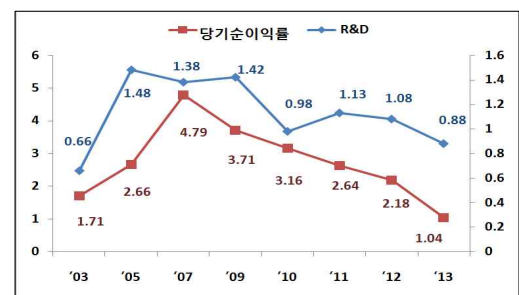


자료출처: '14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 특히, 중견기업 R&D투자 비중은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미래 먹거리 개발 및 성장동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

- 당기순이익률 감소 등 중견기업의 수익성 약화가 R&D 투자 여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우려

* 기업 규모별 R&D 비중(‘13): 중소기업 0.66% < 중견기업 0.88% < 대기업 1.44%



- 수출실적이 있는 중견기업이 절반(48.8%)에 달하나, 5천만불 이상 수출 중견기업의 비중은 10.3% 수준(‘13)

- 한편, 지식재산권 대응역량은 취약하여 상당수 중견기업이 향후 글로벌시장 진출 이후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에 노출

* 국내 지재권 보유 기업 중 19.9%만이 해외 지재권 보유(‘12.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주요 추진과제

① 기술혁신 역량 기반 확충

- (국가 R&D 지원예산 배분) 중견·중소기업 지원비중을 '16년까지 18% 수준으로 확대 (미래부, 기재부)
 - (산업기술 R&D) 대기업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중견·중소기업은 '17년까지 산업기술 R&D의 50% 수준으로 확대 (산업부)
- (출연연의 R&D 전진기지화) 출연연이 보유한 인력,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중견·중소기업 공동연구실 확대 (미래부, 산업부)
 - 중견·중소기업의 기술수요와 출연연 등을 연계하여 밀착 지원하는 '기업-감-워스-톱 서비스' 실시 (15~)
- (맞춤형 지원) 중견 후보기업群 → 중견기업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2단계 R&D 프로그램 마련·시행 (중기청)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R&D 지원체계 >

구 분		글로벌 도약단계 (글로벌 강소기업 R&D)	글로벌 성장단계 (월드클래스 300 R&D)
지원 체계	R&D성격	• 단기 상용화 및 제품혁신	• 중장기 핵심기술 확보
	개발기간	• 2년 이내 (0.5년 + 1~1.5년)	• 5년 이내 (1년 + 3~4년)
	지원조건	• 총개발비의 60%이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 총개발비의 50%이내에서, 최대 75억원까지 지원

- (IP 중심의 R&D 기획 및 경영)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IP-R&D) 전략 수립 (특허청) 및 지재권을 접목한 수출형 특허경영전략 수립 지원 (중기청, "IP 통합솔루션")

- **(공동 R&D)** 중견-중소기업 간의 협력 컨소시엄을 통해 신성장 아이템 기획 → 공동 R&D 및 사업화 지원 (중기청)
- **(디자인 개발)** 유망한 중견·중소기업이 2~3년 앞의 新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상품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 (중기청)
- **(기술보호)** 기술보호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견기업*에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상의 지원제도를 적용 ('15, 중기청)

* 기업 규모별 지식재산권 피해 현황(특허청, 2013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대기업 5.3%, **중견기업 8.3%**, 중소기업 7%

② 세제·금융·수출판로 등 경영여건 개선

- **(세제)** 기업 규모별로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 현황 및 중견기업의 세제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마련 (중기청)
 - *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 신설 및 세액공제 비율 조정 등 '14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중견기업 세제지원의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 **(보증공제)** 대기업 지원은 전면폐지*하고, 중견기업 지원비중을 총 보증한도 ('14. 6.4조원)의 최대 50%까지 확대·운용 (중기청)
 - * 보증공제사업 : 중소기업의 이행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중기중앙회, '12~)
 - * '14년 보증지원 : 대기업 57%(1.9조원), **중견기업 34%(1.2조원)**, 중소기업 9%(0.3조원)
-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경기변동이나 거래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연쇄적인 경영불안 방지 (중기청)
 - * 중견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채권 대손상각률은 2.45%로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거래위험은 약 8.7조원**으로 추정('13년 중견제조업체 기준)
- **(정책자금)** 금융중개지원대출 中 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 규모 확대 (3조원 → 7조원) 및 중견기업 전용자금 2조원 운용 ('15, 한은)
 - *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운영기간을 **1년간 연장**('15.8월말 → '16.8월말)

- **(공공구매)**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를 허용 (판로법 개정)

* 중소기업 지원 축소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이며 공공조달 시장에 3년 이상 참여한 중견기업으로 한정

- **(해외 마케팅)** 수출초보 중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정된 해외 마케팅 지원을 초기중견기업으로 확대 (중기청)

* 중소기업이 개척하기 어려운 중남미 등 신흥시장 위주, 대기업의 해외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동반 진출 지원 등

③ 인력 지원 및 장기재직 유도

- **(인력 육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용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정부지원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 (중기청)

* 등록금 정부지원비율(자 교육형 계약학과) : 중소기업 65%,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30%,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0%

- 중견·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R&D 인력의 고급화를 위해 박사 과정 계약학과 신설 (‘15, 3개 학과, 중기청)
-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현장실습 및 취업대상 기업에 연매출액 2천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포함 (교육부)

- **(연구인력 활용)** 해외전문인력 활용 지원을 초기중견기업까지 적용 (중기청) 하고, 중견기업에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 (병무청)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특례 조항을 중견기업법에 신설 (중기청)

*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공동적립금(인력:기업 = 1:2 이상) + 만기이자” 지급

*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목표(누적) : (‘15) 1만명 → (‘17) 3만명 → (‘19) 5.8만명
가입 실적(‘14.8 ~ ‘15.5) : 1,858개 중소기업의 근로자 4,750명

④ 명문(名門) 장수기업 지원

□ **(확인제도)** 명문장수기업 개념 및 기준을 마련(중소기업진흥법 개정) 하고, **확인 절차** 등의 세부규정을 신설 (중기청)

* 명문 (① 경제적 기여 + ② 지속 가능성 + ③ 사회적 책임) + 장수 (④ 30년 이상)

○ 중소기업진흥법 개정 후, **중견기업법도** 개정하여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 특례규정을 신설

○ 명문장수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확대*** 추진 및 R&D 등 지원시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 가업상속공제 : (일반) 500 → (명문) 1,000억원, 증여특례 : (일반) 100 → (명문) 200억원

* 산업부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중기청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가점 부여

○ 명문장수기업이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엄격한 확인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실시**

□ **(가업승계)** 중견·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성숙해갈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제지원의 사전·사후 요건 완화 추진

* 피상속인의 가업 유지기간 (10년 → 7년), 공동상속 허용, 고용유지의무 완화 등

○ 가업승계지원센터 (중기중앙회) 및 명문장수기업지원센터 (중견련) 등을 통해 **후계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및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

□ **(인식개선)** 「명문 장수기업 정책포럼」 개최, 우수 명문 장수기업 발굴·홍보 등을 통해 **범사회적 공감대 형성**

○ 가업승계로 인한 ‘**부의 집중**’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 정책대안**을 모색

전략 4

사회적 책임 확산 및 정책기반 확충

현황 및 문제점

- 중견기업은 “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인식
 - 대기업 → 중견기업 (1차) → 2·3차 협력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가교 역할 강화를 요구
 - 소수의 대기업 중심에서 다수의 중견기업으로 사회공헌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책임 경영문화 확산 노력*이 필요
- * 예시) 중견기업연합회-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쪽방촌 거주민, 지방출신 대학생 등을 위한 지원형 주거시설 사업 추진 ('15.4~)
- 한편,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기업 정책이력으로 인해, 중견기업 현황 정보 및 정책 관리 등의 정책 인프라도 빈약한 실정

주요 추진과제

①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참여 촉진

- **(참여 확대)** 중견기업이 선도하는 상생협력 문화의 수직적 확산을 위해 중견기업의 자율적 참여 촉진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
 - 중견기업 CEO가 참여하는 동반성장포럼 및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중견기업과 2·3차 협력사의 참여 유도
 - 보다 많은 중견기업이 동반성장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완화 및 해당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15, 공정위)
- * 재무상황이 어려운 중견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평가항목의 만점기준 완화, 중견기업 평가기준 적용 기업의 범위 확대(매출액 5천억원 미만 등 → 7천억원 미만)

□ **(책임 강화)** 대기업 중심의 자율적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중견기업의 참여를 본격화 ('15, 산업부)

- 발주자, 대기업 1차 협력사로서 중견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확대 및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규모의 확대를 추진

*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중소기업까지 최소의 금융비용과 위험 없이 신속히 현금화하는 결제시스템

** 협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

□ **(의무와 권리의 균형)**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회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 보호** ('15, 공정위)

* 중견기업 중 **위탁기업 23.9% < 수탁기업 34.8%** ('14, 중견기업 실태조사)

**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하도급법 제13조)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하여 원활한 자금회수를 유도

②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에 선도적 역할 수행**

□ **(일 학습 병행제 확산)** 중견권을 일학습 병행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운영 (고용부)

- 고용창출 및 인재육성 성과가 우수한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등의 참여를 촉진하여 **'19년까지 1.5만개로 확대**

*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목표(개) : ('15) 3,000 → ('17) 10,000 → ('19) 15,000

- 특성화고 등과 연계한 순회 설명회, 일학습 병행 기업 체험 및 박람회 등도 개최

□ **(인력 미스매치 해소)** 유망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산업부·중기청)

* 한국형 히든챔피언 및 후보기업,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등 참여

- 중견기업 채용수요에 따른 **지역별 연합 채용설명회**도 실시

- ‘히든챔피언 바로알기 특강’ 및 기업 소개 등의 캠페인을 통해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100개 대학(학과)의 대학생 8,000명 대상, 상반기(5~6월)·하반기(9월~11월) 실시

- 중견기업과 지역의 대학·특성화고 간의 “1社-1校” 자매결연* 체계를 유도(중기청) 하고, 유망 중견·중소기업 탐방 확대**(고용부)

* (중견기업) 지역 우수인재 채용 ↔ (학교)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 지역 강소기업 탐방(명) : ('14) 5,000 → ('15) 11,000 → ('16) 15,000

③ 중견기업 정책기반 확대

- (종합정보시스템) 중견기업 현황 및 지원이력, 중견기업 확인, 지원 시책 등을 One-stop으로 파악 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핵심 정책대상인 한국형 히든챔피언, 고성장기업 등을 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정책성과 분석

- (통계기반 정비) 매년 정기적인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추진

* 산업별·업종별, 거래형태별(B2B, B2C, OEM, ODM), 지역별, 대표자 성별(남성, 여성) 등에 따른 중견기업 진입·성장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등을 조사

- 적시성 있는 정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월별 경기전망조사 실시

*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경기 전반, 내수·수출, 자금, 구인 등의 실적 및 전망 조사

- (중견기업인의 날) 매년 7.22일에 (가칭)‘중견기업인의 날’을 선포

* 중견기업정책의 기본이 되는 중견기업법 시행일인 동시에 법정단체인 중견기업 연합회 출범('14.7.22일)을 기념 → 중견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 고취

- 주간 기간 중에 『글로벌 중견기업 산업대전*』 행사('16~)를 통해 우수 중견기업 CEO 및 유공자 등을 발굴·포상

* 세부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중견기업 박람회, 중견기업 글로벌 컨퍼런스, 중견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등 개최

V. 기본계획 이행 방안

- 정부 내 정책협의체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의 주요과제는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반영한 연차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보고 (중견기업법 제6조제2항)

< 정책과제별 소관부처 >

정책과제	주관·협업부처
【전략 1】 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1-① 중소 → 중견기업 성장친화적 법령·제도 정비	중기청, 관계부처
1-② “대기업” 용어 사용 법령 정비	중기청, 관계부처
【전략 2】 중견 후보기업群 발굴·육성	
2-①-1 지역형 강소기업	중기청, 지자체
2-①-2 글로벌 강소기업	중기청
2-①-3 고성장 중소기업	중기청
2-② 지역 단위의 중견 후보기업群 지원체계 구축	중기청, 지자체
2-③ 중견 후보기업群의 저변 확대	중기청
【전략 3】 핵심역량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기업 육성	
3-①-1 국가 R&D 지원예산 배분	기재부, 미래부
3-①-1-1 산업기술 R&D 배분	산업부
3-①-2 출연연의 R&D 전진기지화	미래부, 산업부
3-①-2-1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부

정책 과제	주관 · 협업부처
3-1-3 성장단계 맞춤형 R&D 지원	중기청
3-1-4 IP 중심의 R&D 기획 및 경영 지원	특허청, 중기청
3-1-5 중견-중소기업 공동 R&D	중기청
3-1-6 디자인 개발 지원	중기청
3-1-7 중견기업 기술보호	중기청
3-2-1 중견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중기청, 기재부
3-2-2 보증공제사업 개선	중기청
3-2-3 매출채권보험 가입 허용	중기청
3-2-4 중견기업 전용 설비투자자금 지원	한국은행
3-2-5 공공구매시장에 초기 중견기업 참여	중기청
3-2-6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중기청
3-3-1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중견기업 참여	중기청
3-3-1-1 박사 과정 계약학과 신설	중기청
3-3-1-2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 참여 허용	교육부
3-3-2 해외전문인력 유치 및 전문연구요원 배정	중기청, 병무청
3-3-3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 허용	중기청
3-4-1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 및 지원	중기청, 기재부
3-4-2 가업승계 세제지원	기재부, 중기청
3-4-3 가업승계 인식개선	중기청

【전략 4】 사회적 책임 확산 및 정책기반 확충

4-1-1 동반성장 참여 확대	중기청, 공정위
4-1-2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책임 강화	산업부
4-1-3 하도급거래 중견기업에 대한 보호 강화	공정위
4-2-1 일 학습 병행제 확산	고용부
4-2-2 인력 미스매치 해소	산업부, 중기청, 고용부
4-3-1 중견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중기청
4-3-2 중견기업 통계기반 정비	중기청
4-3-3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	중기청

< 첨부 1 >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지원시책별
중견기업 지원 적용 범위(예시)

분야	지원시책	적용 범위		
		중소기업	초기중견기업	전체중견기업
R&D	R&D 지원예산 배분			
	IP 중심의 R&D 경영 지원	매출액 200억원 이상 중견·중소기업		
	중견-중소기업 공동 R&D	매출액 400억원 이상 중견·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견·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중견 진입 3년 이내		
	상용화기술개발사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중견 진입 3년 이내		
	정보화기반 구축	매출액 3천억원 미만&중견 진입 3년 이내		
인력	중소기업 계약학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중소기업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매출액 2천억원 미만 중견·중소기업		
	해외전문인력 활용 지원	매출액 5천억원 미만&중견 진입 3년 이내		
	전문연구인력 지원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중소기업		
	일학습 병행제 확산			
	인력미스매치 해소			
수출, 판로, 자금 등	중기중앙회 보증공제 지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참여	매출액 2천억원 미만&3년 이내		
	중견기업에 수급사업자 지위 인정			
	매출채권보험 가입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중소기업		
	지역형 강소기업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중견·중소기업		
	고성장 중소기업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매출액 3천억원 미만&중견 진입 3년 이내		
기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			
	가업승계 세제지원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중소기업		

※ 위의 내용은 부처협의, 법령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성장친화적 법령·제도 정비 추진에 따라 중견기업에 적용 지원시책 확대 예정

< 첨부 2 >

**“단계적 지원축소·규제강화(Sliding down)” 원칙이 적용되는
중견기업 지원시책 현황**

1 중견기업 진입 후 지원시책의 단계적 축소

구 분	지원시책	중소기업	중견기업
조 세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에 지급한 결제액 세액공제	0.5%(30일 이내), 0.15%(60일 이내) 공제	30일 이내 네트워크론 결제시 0.4% 공제
	R&D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25% 또는 초과비용의 50%	중견기업 8~15%, 대기업 3~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의 차등적용	투자금액의 10%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5%, 대기업 3%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소득금액의 50%	
	생산성향상, 안전관리, 약품 품질관리개선 시 투자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7%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5%, 대기업 3%
	에너지절약, 환경개선 등 투자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1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7%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5~6%, 대기업 4~5%
	근로소득세액공제	3년 평균 초과임금 증가분의 10%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10%
	대학맞춤형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10%	중견기업 8~15%, 대기업 3~4%
	최저한세	감면 전 과세표준의 7%	중견기업 8~17%
	기업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 가업상속 재산을 공제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가업상속 재산의 100%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완화된 과세요건들을 적용	
	유가증권할증평가	10~15% 할증평가	20~30% 할증평가
	접대비한도 혜택	(18백만원×사업연도 월수/12) 초과시 손금불산입	(12백만원×사업연도 월수/12) 초과시 손금불산입
	세금납부 기한연장	2개월 이내 납부	1개월 이내 납부
	가산세한도 우대	5천만원	1억원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중소기업 및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보세판매장의 30% 이상 부여	

구 분	지원시책	중소기업	중견기업
R&D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기술료로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 징수	중견기업은 30%, 대기업은 40% 징수
	농림식품 R&D 기술료 감면	중소기업은 기술료의 70% 감면	중견기업 50%, 대기업 30%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5명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인 력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 자금대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 금리, 대기업은 2.5% 금리	
수 출 판 로 등	방산물자조달 계약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일반관리비 계산시에, 일반관리비 비율 한도를 우대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	총 사업 소요비용의 70% 이내	총 사업 소요비용의 50% 이내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의 50% 감면	출원료, 심사청구료의 30% 감면

2 중견기업 진입 후 적용되는 규제의 단계적 강화

구 분	규제 내용	비고
판 로	물품 등 제조 위탁시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대·중소기업 상생법 제21조)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으로 간주(중견기업법 제13조, 시행령 제6조)
	납품대금은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지급(대·중소기업 상생법 제22조)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 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대·중소기업 상생법 제23조)	
	지급기일내 납품대금 지급,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 금지 등 14가지 행위사항 준수(대·중소기업 상생법 제25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대기업이 참여가능한 사업금액 하한 고시(이러닝산업발전법 제20조의5)	매출 1,5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대기업에서 제외(중견기업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미래부 고시 제2014-25호)	중견기업(5년 이내)은 발주금액 20억원 이상, 매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40억원,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이상 사업만 참여
기 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참여 대기업에 대한 협약이행 평가시, 중견기업은 평가항목의 만점 기준을 완화(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기준)	매출 7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적용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위해서는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요건 충족(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40%, 대기업 50%

중견기업 개념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을 의미

- * 중소기업 : 3년간 평균 매출액 등이 업종별로 400억원(숙박 및 음식업)~1,500억원(1차 금속 제조업 등)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가 금지된 기업집단 (15년, 61개 집단, 1,696개 기업)

< 중견기업의 범위 >

『중견기업법』 제2조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30%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중견기업법』 제5조제1항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견기업 정책 추진경과

- '10년 이후 중견기업이 정책대상으로 등장하였고,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중견기업 육성을 핵심국정과제(4-5.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마련)로 설정
- 중견기업정책 업무의 이관('13.3, 산업부 → 중기청) 이후,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 제거 및 글로벌 전문기업화 등을 본격 추진

- ①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전략」 수립·추진('10.3.18)
 - R&D세액공제, 금융부담 등 중소기업 졸업시 부담완화기간(5년) 설정·운영,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추진('11년~)
- ② 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11.7.1 시행)
- ③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내에 「중견기업정책실」 신설('12.5.1)
- ④ '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전략으로,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 수립·추진('12.8.9)
- ⑤ 중견기업정책 기능을 산업부 → 중기청 이관('13.3, 중견기업정책국)
- ⑥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수립·추진('13.9.17)
 - 中企 졸업 후에도 지원 제도·법령을 단계적 축소(Sliding down) 방식으로 전환, 별도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마련
- ⑦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14.7.22)
 -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초기 중견기업 특례, R&D·인력 등 혁신역량 강화 등
- ⑧ 「명문 장수기업 육성방안」('14.9)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14.10) 마련 → 중견기업 정책 저변 확대